

주제: 미조직 교회, 등록 교인, 교회의 직원(직분자)

Theme: Mission Churches, Church Members, Officers

(adapted from Chapters 5A, 6, 7 of *The Book of Church of Order*,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서론:

5A. Mission Churches

5 가. 미조직 교회

- 5-1. A mission church may be properly described in the same manner as the particular church is described in BCO 4-1. It is distinguished from a particular church in that it has no permanent governing body, and thus must be governed or supervised by others. However, its goal is to mature and be organized as a particular church as soon as this can be done decently and in good order.
- 5-1. 미조직 교회는 교회헌법 4-1 에 설명된 조직 교회와 같은 방법으로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 미조직 교회는 항존 치리 기구가 없어서 다른 기관에 의해 다스려지고 감독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 교회와 구별된다. 그러나 미조직교회의 목표는 가능한 한 품위 있게 또 건전한 질서 안에서 신속히 성장하여 조직 교회가 되는 것이다.

미조직 교회

- 조직 교회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지만 항존 치리 기구, 다시 말해 당회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 교회는 늘 다스림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 그래서 미조직 교회의 중요한 목표는 질서 있게 신속히 조직 교회가 되는 것이다.

5-2. Ordinarily, mission churches are established by Presbyteries within their boundaries.

- a. Initiatives to which the Presbytery may respond in establishing a mission church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 i. The Presbytery establishes a mission church at its own initiative.
 - ii. The Presbytery responds to the initiative of a Session of a particular church.
 - iii. The Presbytery responds to the petition of an independent gathering of believers who have expressed their desire to become a congregation by submitting to the Presbytery a written request.
- b. In the event an existing non-PCA church is interested in coming into the PCA, the Presbytery shall work with the church leadership to determine whether the church should come into the PCA as a mission church or seek Presbytery approval to be received under the provisions of BCO 13-8.
- c. Should it become necessary, the Presbytery may dissolve the mission church. Church members enrolled should be cared for according to the procedures of 13-10.
- d. If the mission church is located outside the bounds of a Presbytery, the responsibility may be exercised through the General Assembly's Committee on Mission to North America or Committee on Mission to the World, as the case may be, according to the *Rules of Assembly Operations*. In such a case the powers of the Presbytery in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be exercised by the General Assembly through its appropriate committee.
- 5-2. 보통, 미조직 교회들은 노회들이 그들의 경계 안에 설립한다.
- ㄱ. 미조직교회를 설립할 때 노회가 대응해야 하는 주도적인 것들은, 거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
 - i. 노회는 미조직 교회를 그 노회의 주도로 설립한다.
 - ii. 노회는 한 조직 교회 당회의 주도에 대응한다.
 - iii. 노회는 그 노회에 회중이 되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표현한 독립된 신자들의 모임의 청원서에 대응한다.
 - ㄴ. 미국장로교에 소속되지 않은 기존 교회가 미국장로교회에 가입하는데 관심이 있을 경우에, 노회는 그 교회가 미국장로교의 미조직 교회로 가입해야만 할 것인지 혹은 노회가 헌법 13-8 의 규정 하에 가입될 수 있도록 노회 인준을 추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작업을 해야 한다.
 - ㄷ. 해체가 필요하게 된다면, 노회는 미조직 교회를 해체 할 수 있다. 등록되었던 교인들은 13-10 의 절차에 따라 돌봄을 받아야 한다.
 - ㄹ. 만일 미조직 교회가 노회의 경계 밖에 위치해 있다면, 그 책임은 총회운영세칙에 따라 총회의 국내선교위원회 혹은 세계선교위원회를 통하여 행사된다. 그런 경우 다음에 나오는 규정을 따르는 노회의 권한은 총회가 총회의 적절한 위원회를 통해 행사한다.

메릴랜드언약장로교회는 PCA 한인수도노회 관할 하에 있으며 수도노회의 내지선교부에서 김동우 목사와 함께 하는 회중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노회의 미조직교회로 설립되었다. (12/26/19 청원, 1/5/20 승인)

- 5-3. The mission church, because of its transitional condition, requires a temporary system of government.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and at its own discretion, Presbytery may provide for such government in one of several ways:
- Appoint an evangelist as prescribed in with BCO 8-6.
 - Cooperate with the Session of a particular church in arranging a mother-daughter relationship with a mission church. The Session may then serve as the temporary governing body of the mission church.
 - Appoint a BCO 15-1 commission to serve as a temporary Session of the mission church. When a minister of the Presbytery has been approved to serve as pastor of the mission church, he shall be included as a member of the commission and serve as its moderator. The temporary system of government shall record and submit its records to Presbytery for annual review in the same manner as Sessions of particular churches.
- 5-3. 미조직 교회는 과도기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임시 치리 기구가 요구된다. 미조직 교회의 형편과 재량에 따라, 노회는 여러 방법 중의 한 치리 형태를 부여할 수 있다:
- 교회헌법 8-6에 규정된 대로 한 전도 목사를 임명한다.
 - 한 조직 교회의 당회와 미조직교회를 모자결연 시켜 협동하게 한다. 이 때 이 당회는 그 미조직 교회의 임시 치리 기구로서 봉사할 수 있다.
 - 미조직 교회의 임시 당회로 봉사할 헌법 15-1 전권위원회를 임명한다. 노회의 목회자가 미조직교회의 목사로 봉사 하도록 인준을 받았을 때, 그는 전권위원회의 회원에 포함되며 그 전권위원회의 의장으로 봉사한다. 임시 치리 기구는 반드시 그것의 회의록들을 기록하여 조직 교회들의 당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례 검토를 위해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메릴랜드언약장로교회는 임시 치리 기구의 다스림과 감독을 받는 미조직 교회로서 1/5/20 임시노회에서 임명한 당회전권위원회의 치리를 받는다. 현재 당회전권위원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 길종언 장로(RE Charles Gill,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은퇴장로)
- 김동우 목사(TE Dong Woo Kim, 메릴랜드언약장로교회 조직목사, 전권위원회 위원장)
- 오지영 목사(TE Mark Oh, Christ Central Presbyterian Church 출석, Christian Embassy Associate Director, 전권위원회 서기)
- 최재근 장로 (RE Jae Keun Choi, 맥클린한인장로교회 은퇴장로)
- 홍장석 목사 (TE Chang Sok Hong, 하사나 교회 목사)

- 5-4. Pastoral ministry for the mission church may be provided:
- by a minister of the Presbytery called by Presbytery to serve as pastor, or
 - by stated, student, or ruling elder supply (BCO 22-5, -6), or
 - by a series of qualified preachers approved by the temporary government (BCO 12-5.e).
- 5-4. 미조직교회를 위한 목회 사역은 다음과 같이 공급된다:
- 노회로부터 목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해당 노회의 목사에 의해서, 혹은
 - 현직, 학생, 혹은 임시 치리 장로에 의해서 (헌법 22-5, -6), 혹은
 - 임시 치리회가 인준한 자격 있는 일련의 설교자들에 의해서 (헌법 12-5.ㄱ).

메릴랜드언약장로교회의 목회사역은 김동우 목사가 당회전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섬기며 목회사역을 공급하다가 노회가 김동우 목사를 2020년 6월 29일 임시노회에서 조직목사로 임명하였다.

- 5-5. The temporary government shall receive members (BCO 12-5.a) into the mission church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BCO 57 so far as they may be applicable. As members of the mission church those received are communing or non-communing member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 If there is a minister approved by Presbytery to serve the mission church as its pastor (BCO 5-4.a), each member so received shall be understood to assent to the call of that minister and to affirm the promises made to the pastor in BCO 21-10.
 - Meetings of the members of the mission church shall be govern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BCO 25 so far as they may be applicable.

- 5-5. 임시 치리회는 헌법 57의 규정을 따라서 규정이 적용 될 수 있는 한 미조직교회에 교인들을 받아 들인다 (헌법 12-5. 7). 미조직교회의 교인들로서 받아들여진 그들은 미국장로회의 수찬 혹은 비수찬 교인이다.
- ㄱ. 만일 노회가 미조직 교회를 섬기도록 그 교회의 목사로 인준한 목회자가 있다면 (헌법 5-4. 7), 그렇게 받아들여진 각 교인은 그 목회자를 청빙하기로 동의 한 것과 헌법 21-10에 있는대로 목사에게 약속한 것을 확증한 것임을 이해 하여야 한다.
- ㄴ. 미조직교회 교인들의 모임은 헌법 25의 규정이 적용되는 한 그 규정을 따라서 치리를 받아야 한다.

메릴랜드언약장로교회는 2020년 11월 22일에 총 40명의 수찬 교인이 선서하였고, 그 중 1명이 세례를 받았다. 비수찬교인으로 10명의 자녀가 있다.

메릴랜드언약장로교회는 2021년 2월 14일에 첫 정식 공동의회를 가졌다.

- 5-6. Mission churches and their members shall have the right of judicial process to the court having oversight of their temporary governing body.
- 5-6. 미조직 교회와 그 교인들은 그들의 임시 치리 기구를 감독하고 있는 치리회에 재판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다.
- 5-7. Mission churches shall maintain a roll of communicant and noncommunicant members, in the same manner as, but separate from, other particular churches.
- 5-7. 미조직 교회는 다른 조직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수찬교인과 비수찬 교인의 명단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명단은 다른 조직교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 5-8. It is the inten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that mission churches enjoy the same status as particular churches in relation to civil government.
- 5-8. 미조직 교회들이 정부 기관과의 관계에서 조직 교회와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것이 미국장로회의 의도이다.

CHAPTER 6 Church Members 제 6 장 등록 교인

- 6-1. The children of believers are, through the covenant and by right of birth, non-communing members of the church. Hence they are entitled to Baptism, and to the pastoral oversight, instruction and government of the church, with a view to their embracing Christ and thus possessing personally all benefits of the covenant.
- 6-1.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또 생득권에 의해서 그 교회의 비수찬교인이 된다. 그로 인해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언약의 모든 혜택을 개인적으로 소유한다는 관점에서, 세례와 목사의 감독과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를 받을 자격을 부여 받는다.
- 6-2. Communing members are those who have made a profession of faith in Christ, have been baptized, and have been admitted by the Session to the Lord's Table. (See BCO 46-4 for associate members).
- 6-2. 수찬 교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당회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다. (준회원에 대해서는 교회헌법 46-4 참조)
- 6-3. All baptized persons are entitled to the watchful care, instruction and government of the church, even though they are adults and have made no profession of their faith in Christ.
- 6-3.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성인이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을 지라도, 교회의 조심스러운 보호와 가르침과 치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
- 6-4. Those only who have made a profession of faith in Christ, have been baptized, and admitted by the Session to the Lord's Table, are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privileges of the church. (See BCO 57-4 and 58-4)
- 6-4.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당회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교회의 모든 권리와 특권에 대한 자격이 주어진다. (교회헌법 57-4 와 58-4 참조)

비수찬교인

- 교회 안의 믿는 사람들의 자녀.
- 언약으로 말미암아 또 생득권에 의해
-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언약의 모든 혜택을 개인적으로 소유한다는 관점에서 => 것을 바라보며

수찬교인

-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 세례 받음
- 성찬에 참여하도록 당회의 허락을 받음

(유아)세례는 받았는데 신앙고백이 없는 성인

- 교회의 조심스러운 보호와 가르침과 치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수찬교인에게만 교회의 모든 권리와 특권에 대한 자격이 주어진다.

- 7-1. Under the New Testament, our Lord at first collected His people out of different nations, and united them to the household of faith by the ministry of extraordinary officers who received extraordinary gifts of the Spirit and who were agents by whom God completed His revelation to His Church. Such officers and gifts related to new revelation have no successors since God completed His revelation at the conclusion of the Apostolic Age.
- 7-1. 신약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여러 민족들로부터 그의 백성을 모으셨고, 또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특별한 직분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특별한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계시를 완성하게 한 대행자들이다. 새 계시와 관련된 그런 직분들과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사도 시대를 종결하실 때 자신의 계시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계승자가 없다.
- 7-2. The ordinary and perpetual classes of office in the Church are elders and deacons. Within the class of elder are the two orders of teaching elders and ruling elders. The elders jointly have the government and spiritual oversight of the Church, including teaching. Only those elders who are specially gifted, called and trained by God to preach may serve as teaching elders. The office of deacon is not one of rule, but rather of service both to the physical and spiritual needs of the people. In accord with Scripture, these offices are open to men only.
- 7-2. 교회 내의 보통 항존직은 장로들과 집사들이다. 장로직에는 강도장로와 치리장로 두 종류가 있다. 장로들은,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여, 연합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영적으로 감독한다.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치도록 특별하게 은사와 소명을 받고 훈련을 받은 장로들만이 강도장로로서 봉사할 수 있다. 집사의 직책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영육간에 필요한 봉사를 하는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직책은 오직 남자들에게만 허락된다.
- 7-3. No one who holds office in the Church ought to usurp authority therein, or receive any official titles of spiritual preeminence, except such as are employed in the Scriptures.
- 7-3.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그로 인해 월권해서는 안 되며, 성경에서 사용된 칭호 이외에 직분에 대한 어떤 영적 존칭을 받아서도 안 된다.

신약의 사도 시대

-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직분자들 - 사도, 선지자

현재 교회 내의 보통 항존직

- 장로와 집사

장로

- 강도장로와 치리장로
- 가르치는 것, 연합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영적으로 감독하는 것
-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치도록 특별하게 은사와 소명을 받고 훈련을 받은 장로들만 강도장로로 봉사할 수 있음

집사

-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육간에 필요한 봉사를 하는 것

장로와 집사의 직책은 남자들에게만 허락됨.

월권 및 영적 존칭 금지

- 기능적 칭호는 가능하나 영적 지위의 개념을 가지는 것은 금지한다